

2024년 미래 청년 일자리 사업 참여기업(사업장) 모집 공고

서울시에서는 청년층에게는 일경험 및 직무역량 향상을 도모하고 기업에는 청년 인재를 매칭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미래 청년 일자리 사업」 참여기업(사업장)을 모집합니다.

2024년 3월 8일
서울특별시청

1 공모 개요

- 사업명 : 미래 청년 일자리 사업 참여기업(사업장) 모집
- 참여기업 : 3개 분야 190여개 기업(단체)
 - 온라인콘텐츠 분야(100개), 제로웨이스트 분야(40개), 소셜벤처 분야(50개)
 - ※ 모집신청 현황에 따라 각 분야 규모(기업수)는 조정될 수 있음
- 신청자격

분야	기준	내용
온라인콘텐츠	분야	- '온라인콘텐츠' 관련 기업* : 콘텐츠 창작 과정(기획·개발·제작·생산·유통·소비 등)에 혁신적 요소(기술의 혁신적 결합·활용 등)를 더하여 사업적 접근을 시도하는 기업 *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 참고
	지역	- 공고일 기준 서울시 및 서울에서 출퇴근이 가능한 수도권(경기)에 소재한 기업(단체) ※온라인콘텐츠 분야의 경우 산업 특수성을 감안하여 서울에서 출퇴근 가능한 수도권(경기)까지 포함
	기업연차 / 상근자	- 창업 2년 이상, 상시근로자가 3인 이상인 기업(단체) * 창업일기준 : 단체등록증, 사업자등록증, 고유번호증 등 기업(단체) 증빙서류
	공통사항 (협약 교육 전담인력)	- 미래 청년 일자리 사업 취지에 공감하여 서울시와 협약을 체결하고, 협약 내용을 충실히 이행할 의지가 있는 기업(단체) - 참여자의 직업역량 향상을 위한 업무 및 역할 등 구체적 계획을 보유하며, 서울시의 공통교육에 적극적으로 협조 가능한 기업(단체) - 참여자의 업무지도 전담인력을 보유한 기업(단체)

제로웨이스트 (기후환경)	분야	- 제로웨이스트(기후환경) 분야 업무 및 업종에 종사하는 기업 및 단체 : 기후대기·생태·자원순환·환경교육·환경평가 등 세분화하여 참여 모집
	지역	- 공고일 기준 사업장이 서울시에 소재하는 기업(단체) ※본사가 서울 외 지역인 경우, 서울시 소재의 참여자 출퇴근 사업장 필수
	기업연차 / 상근자	- 창업 1년 이상, 상시근로자가 2인 이상인 기업(단체) * 창업일기준 : 단체등록증, 사업자등록증, 고유번호증 등 기업(단체) 증빙서류
	공통사항 (협약 교육 전담인력)	- 미래 청년 일자리 사업 취지에 공감하여 서울시와 협약을 체결하고, 협약 내용을 충실히 이행할 의지가 있는 기업(단체) - 참여자의 직업역량 향상을 위한 업무 및 역할 등 구체적 계획을 보유하며, 서울시의 공통교육에 적극적으로 협조 가능한 기업(단체) - 참여자의 업무지도 전담인력을 보유한 기업(단체)
소셜벤처	분야	- 서울 소재 소셜벤처 기업(하단의 내용 모두 충족해야함) - 기술보증기금 또는 중소기업벤처부가 발급한 '소셜벤처기업 판별결과 통지서' 제출이 가능한 기업 또는 서울시 미래청년기획단에서 제시하는 '소셜벤처 판별기준표(붙임2)'에 부합하는 소셜벤처 ※소셜벤처 판별기준표의 사회적 및 혁신성장성이 각각70점 이상인 기업을 소셜벤처로 판별하며, 혁신성장성의 경우 판별기준(70점)에 미치지 않더라도 심사위원회에서 신청 기업 사업 내용의 구체성·타당성 및 사업 모델의 수익상·지속가능성을 검토하여 소셜벤처로 인정할 수 있음
	지역	- 공고일 기준 사업장이 서울시에 소재하는 기업(단체) ※본사가 서울 외 지역인 경우, 서울시 소재의 참여자 출퇴근 사업장 필수
	기업연차 / 상근자	- 창업 2년 이상, 상시근로자가 3인 이상인 기업(단체) * 창업일기준 : 단체등록증, 사업자등록증, 고유번호증 등 기업(단체) 증빙서류
	공통사항 (협약 교육 전담인력)	- 미래 청년 일자리 사업 취지에 공감하여 서울시와 협약을 체결하고, 협약 내용을 충실히 이행할 의지가 있는 기업(단체) - 참여자의 직업역량 향상을 위한 업무 및 역할 등 구체적 계획을 보유하며, 서울시의 공통교육에 적극적으로 협조 가능한 기업(단체) - 참여자의 업무지도 전담인력을 보유한 기업(단체)

□ (공통)참여제외 대상 ※중복지원 불가능

- ※ 아래의 사항 중 하나 이상 해당될 경우 참여 제외
- ①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이거나, 그러한 사실이 있는 자를 선발하려는 사업장
※공고일로부터 과거 6개월 이내의 당해사업장 상시근로자는 참여자로 참여 불가
※참여자 선정 이후 고용보험 가입 상태 내역 확인 후 해당 사실이 확인될 경우 사업장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 ② 신청하는 사업에 대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장
※동일하거나 유사한 재정지원이란, 동일한 사업으로 인건비 지원(중소기업 청년인턴제, 공공근로 등)을 받는 경우를 말함
- ③ 사업 취지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단순 노무직종의 사업장
- ④ 참여자의 근로환경(사무공간 및 사무집기 등)준비 및 전담인력 배치가 적합하지 않은 사업장
- ⑤ 배치될 참여자에 대한 근로환경이 적합하게 준비되어 있지 않고, 교육 훈련계획 및 전담인력이 없는 기업(단체)

- 공고게시 : 2024. 3. 8.(금) ~ 3. 31.(일) / 3주간
- 접수기간 : 2024. 3. 25.(월) ~ 3. 31.(일) / 23:59까지
- 접수처 : 청년몽땅정보통 온라인 신청(youth.seoul.go.kr)
- 제출서류 **※신청페이지 내 첨부**

- 사업 참여 신청서 (붙임 서식 1~5)
- 단체등록증, 사업자등록증, 고유번호증, (소셜벤처 지원 시)소셜벤처기업 판별 결과 통지서 등 증빙서류
-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공고일 이후 발급본 제출)
- (해당시 추가 제출) 소셜벤처 판별기준표, 한국콘텐츠진흥원 입주기업 증빙자료, 사회적가치지표(SVI) 자료, '23년도 참여청년 고용승계 증빙자료(근로계약서, 프리랜서 계약서 등 **※민감정보 가림 처리**)
- ※ 첨부파일 제출시 파일명 : 단체명_제출서류명 / 예)(주)0000_고유번호증

□ 지원내용

- 각 분야 일자리 참여자 매칭 지원(단체별 2~5명 이내) 및 월 임금 지급

참여자
※ 참여자는 서울특별시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서울시가 참여자에게 직접 임금 지급(4대보험, 주휴수당 등 포함)
① 참여자 근무기간 : 2024. 6.~12.(약 6개월)
② 참여자 근무시간 : 일 8시간, 주 5일 근무
③ 참여자 근무지 : 각 분야의 참여기업(사업장)에 배치
④ 참여자 임금 : 시급 11,436원 ('24년 서울시 생활임금 기준)

- 참여자 기본교육 및 분야별 직무역량 강화 교육 지원
- 사업장 대상 본 사업 오리엔테이션 등 사업 관련 교육 진행

□ 지원기간 : 2024. 6. ~ 12.

2 선발방법

□ 서류심사

- 심사일정 : 2024. 4. 1. ~ 4. 5.(예정)

- 선정기준 : 심사기준표에 의거 고득점순 선정
 - 동점의 경우, **참여자의 일자리 후속연계 계획의 현실성 > 참여자의 업무 및 교육 계획의 구체성 > 신청 사업의 적합성 및 효과성** 점수가 높은 순으로 선정
 - 현장실사 및 면접심사 대상자는 지원 예정규모 1.5배 내외로 선정
- 심사위원 구성 : 분야별 총 3~5명으로 구성(유관기관 및 외부전문가)
- 결과발표 : 2024. 4. 5.(예정) ※서류심사 선정기업 운영기관 별도 안내
- 심사기준표(안)

심사항목	세부항목	배점(100)
신청사업의 적합성 및 효과성	기업의 지원분야 적합성	20
	기업의 대외적 가치 및 성과	10
참여자의 업무 및 교육계획의 구체성	참여자 업무 내용의 구체성	20
	업무지도 및 교육 지원계획	10
일자리 후속연계 계획의 현실성	향후 후속지원 계획	30
	근무요건 및 환경	10

※ 기점 및 자격요건 관련 사항

- 서울특별시-한국콘텐츠진흥원 업무협약 체결에 따라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육성 유망 콘텐츠 기업(※2021~현재 기준 운영시설 입주기업)**이 온라인콘텐츠 분야에 참여기업으로 신청할 경우 서류심사에 가점을 부여함
- 서울특별시-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업무협약 체결에 따라 **사회적가치지표(SVI) 측정 탁월/우수 기업이 소셜벤처 분야에 참여기업으로 신청할 경우** 서류심사에 가점을 부여함
 - ※ ('21~현재)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에서 참여기업이 직접 발급하여 제출 (~20년) [제출서식2] 기업·기관 및 사업소개란에 사회적가치지표 해당 사항 기입, 이후 담당 부서에서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 검증 요청

※ '23년 참여기업(고용승계 우수 기업) 우대 관련 사항

- '23.12.31.일자 참여자 기준으로 공고문 게시일 이전까지 고용승계 된 인원의 비율이 50% 이상이고,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한 기업 해당
- 분야별 선정심의위원회의 서류 적부심사를 통해 선발 진행(면접심사 미진행, 결과발표일은 일반 심사와 동일)

□ 현장실사

- 실사일정 : 2024. 4. 8. ~ 4. 17.(예정)
- 점검내용
 -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주소지, 단체 주사무공간의 일치 여부 확인
 - 지원사업 관련 근무인력, 복무관리, 교육훈련 계획 등 확인
 - 사업장 근무환경 등 확인 등
- 현장실사단 구성 : 사업운영 전문기관 선정 후 논의를 통해 구성
 - ※신청규모와 코로나19 등 상황에 따라 일정 및 진행방법 변경 가능
 - ※'23년 고용승계우수기업 현장실사 제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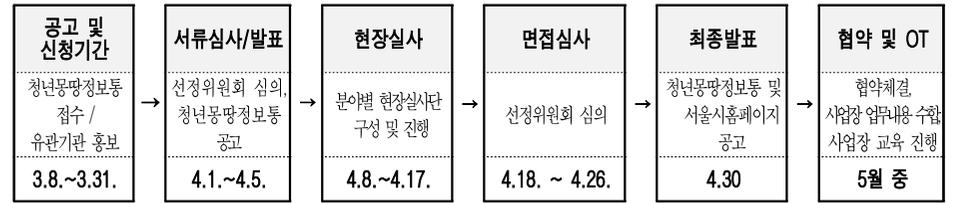
□ 면접심사(심층면접)

- 면접일정 : 2024. 4. 18. ~ 4. 26.(예정)
- 면접방법 : 각 단체별 15분 내외의 인터뷰방식의 면접 진행
 - ※신청규모와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일정 및 진행방법 변경될 수 있음
- 선정기준 : 심사기준표에 의거 고득점순 선정
 - 동점의 경우, **참여자의 일자리 후속연계 계획의 현실성 > 참여자의 업무 및 교육 계획의 구체성 > 신청 사업의 적합성 및 효과성** 점수가 높은 순으로 선정
 - 전체 참여자 모집 예정인원(500명) 및 분야별 기업의 배치희망 인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 선발 기업(사업장)수 확정
- 심사장소 : 별도 안내
- 심사위원 구성 : 분야별 3명~5인으로 구성(유관기관 및 외부전문가)
- 결과발표 : 2024. 4. 30.(예정)
- 심사기준표(안)

심사항목	세부항목	배점(100)
신청사업의 적합성 및 효과성	기업의 지원분야 적합성	20
	기업의 대외적 가치 및 성과	10
참여자의 업무 및 교육계획의 구체성	참여자 업무 내용의 구체성	20
	업무지도 및 교육 지원계획	10
일자리 후속연계 계획의 현실성	향후 후속지원 계획	30
	근무요건 및 환경	10

3 추진절차

□ 추진절차



※ 추진 절차(일정)은 기업 신청 규모와 현장 사정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4 기타사항

- 신청기간 내 관련서류를 제출하지 않아 생기는 모든 문제에 대한 책임은 신청자에 있습니다.
- 심사와 관련된 사항은 서울시의 고유권한이며 심사내용 등 관련 자료는 비공개합니다.

5 문의처

- 온라인콘텐츠, 소셜벤처 분야 (2133-4307, rlarkdd@seoul.go.kr)
- 제로웨이스트(기후환경) 분야 (2133-4324, maissidouces@seoul.go.kr)

- 붙임 1. 미래 청년 일자리 사업 참여기업(사업장) 모집 신청서 및 서식(1~5) 1부.
- 붙임 2. 소셜벤처 판별기준표 1부. 끝.

【서식3】 배치인력 직무기술서

※ 2개 이상의 직무로 참여인력을 신청할 시 아래 항목 중 2~3번 항목은 각 직무별 작성 필수이며, 참여자의 배치부서 및 관리담당자 또는 근무조건이 상이할 경우 4번 항목도 구분하여 작성

1. 참여자 연간 관리운영 계획

운영계획	본 사업을 통해 참여자 사업장 내 배치할 참여자 역할, 수행업무 연간계획, 업무지도 및 관리 운영계획, 조직도(필수) 등을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	--

2. 참여자 수행직무 및 요구 역량

[①○○○○○ 직무]

소속	예) 경영지원팀	모집인원	1명
관리담당자	경영지원팀 홍길동 팀장	연락처	02-0000-0000
역할 및 업무내용	<상세하게 기술> 예) • 월별계획:(6월)기업규모 파악 및 자료수집 (7월)기초안 작성 (8월) 최종본 제출 • 사업기획 및 지원체계 수립 절차에 참여 • 관련 관계자 회의 참석 및 워크숍 참석 • 재원조달 방안 및 프로세스 구축		

[②○○○○○ 직무]

소속		모집인원	
관리담당자		연락처	
역할 및 업무내용			

3. 배치인력 업무지도 및 교육 지원계획

담당자명		직책/주요업무	
직무 관련 교육계획	* * *		

4. 근무요건 및 환경

근무시간	00:00~00:00 (일 8시간 근무, 휴게시간 1시간 포함)	휴게시간	00:00~00:00
기타사항	<input type="checkbox"/> 원격 근무 여부 (주 0회 채택) ※서울시 협의 필요 사항 <input type="checkbox"/> 유연 근무 여부 (세부내용 기재) ※서울시 협의 필요 사항 <input type="checkbox"/> 출장 여부 (평균 주 0회 0시간 발생)		
근무환경 및 복지혜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본 제공 사무기기 및 사무공간 목록 • 공유좌석 등 특이사항 있을 경우 기재 • 직원들에게 제공되는 복지제도 		
근무환경 사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여자 근무 예정 공간(자리) 필수 첨부 		

5. 향후 후속지원 계획

사업종료 후 참여자 지원 계획 (고용승계)	<input type="checkbox"/> 예(명) <input type="checkbox"/> 아니오(하단의 기타항목에 해당 사유 기술)
고용승계 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채용 시 근무 예정지 : (예) 기존 근무지와 동일 - 채용 예정인원 규모 : (예) 1명 - 정규/계약직 여부 : (예) 정규직 - 고용시 심사계획 : (설명) 자체 근로계약 기준 및 프로세스 기재
기타	고용승계 불가시 해당사유와 고용승계를 제외한 참여자 고용연계 계획 기재 (예) 타기업 취업 연계 가능성 등

【서식4】 근무환경 체크리스트

배치인력의 기본적인 근무환경 보장을 위한 신청단체의 사전 체크리스트로 참여사업장으로 선정되는 경우 인력 배치 시점에는 반드시 기본조건을 충족시켜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 대해서는 별도로 이유를 설명하여야 함.

기본사항

No	확인사항	해당여부
1	사무실 내에 담당자와 함께 배치인력이 근무할 공간이 있다	<input type="checkbox"/> Y <input type="checkbox"/> N
2	배치인력이 사용 가능한 책상·의자 등 사무집기가 있다	<input type="checkbox"/> Y <input type="checkbox"/> N
2-1	(사무집기가 없는 경우) 배치인력 근무를 위하여 사무집기를 구비(렌트)할 것이다	<input type="checkbox"/> Y <input type="checkbox"/> N
3	배치인력이 사용 가능한 컴퓨터·전화기 등 사무기기 및 오피스 프로그램이 있다	<input type="checkbox"/> Y <input type="checkbox"/> N
3-1	(사무기기가 없는 경우) 배치인력 근무를 위하여 사무기기를 구비(렌트)할 것이다	<input type="checkbox"/> Y <input type="checkbox"/> N
4	배치인력에게 근무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부여할 수 있는 업무가 있다	<input type="checkbox"/> Y <input type="checkbox"/> N
5	배치인력의 직무분야 관련 업무를 지도, 관리하는 직원이 있다.	<input type="checkbox"/> Y <input type="checkbox"/> N

특이사항 및 기타

근무환경에 특이사항이 있는 경우 기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1회 외근, 공유좌석제 운영 등)
필요시 근무환경 관련 사진 첨부 등

【서식5】 사업장 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사업장 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미래 청년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사업장의 사업장식별정보(사업자등록번호, 법인 등록번호 등)를 포함한 사업장정보를 다음과 같이 전산망에 수집·관리하고 있습니다.

- 사업장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참여자 선정·관리, 참여자 지원금 및 개인별 참여이력 관리, 4대보험 가입이력조회, 휴·폐업여부 조회, 임금체불 조회, 고용조정 또는 고용유지조치 실시여부 등 지원요건 확인 등에 활용
- 수집하는 사업장정보 항목: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휴대폰)
- 사업장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전산망에서 수집 및 계속 관리
- 사업장정보의 제공: 타 법령 등에 의하여 실시되는 복지 및 일자리 사업과의 중복여부, 지원요건 충족확인 등 관리의 목적으로 제공

본인은 위의 내용에 따른 미래 청년 일자리 사업 참여·운영을 위해 사업장식별정보(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기부등본 등)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단체: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
전 화 번 호 (휴 대 폰)	
사 업 자 등 록 번 호	
법 인 등 록 번 호	

붙임 2 | 소셜벤처 판별기준표(자가진단표)

※ 아래 판별기준표(자가진단표)를 작성 후, 관련 증빙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 1) ①사회성 판별표와 ②혁신성장성 판별표를 적용하여 판별하여
 - 판별표에 의한 점수가 각각 70점 이상인 기업을 소셜벤처로 분류한다.
- 2) 혁신성장성의 경우 판별기준(70점)에 다소 미치지 않더라도 심사위원회에서 신청기업 사업 내용의 구체성·타당성 및 사업 모델의 수익성·지속가능성을 검토하여 본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소셜벤처)을 인정할 수 있다.

① 사회성 진단표

사회성 판별표				점수	자가 진단	비고
		판별 항목				
사회적 경제기업 관련 인증	1	중앙정부, 지자체 등으로부터 인가 및 인증받은 사회적경제 기업(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또는 비콤포(B-corp) 인증을 받은 기업		100점		예비사회적기업의 경우 70점
	2	제공하는 제품이나 서비스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 이를 통해 사회적 가치를 창출 중인 기업(단, 기획단계부터 사회 문제 해결을 전제하고, 실제 제품서비스를 사업화하고 있는 기업에 한함) * K-SDGs 세부목표와 연계		70점		판별근기 입력
사회적 가치 추구 정도	3	회사가 추구하는 사회적 가치 또는 해결하려는 사회적 문제가 정관에 구체적으로 명시 ¹⁾ 되어 있고, 추진 ²⁾ 중인 기업		50점		정관 외 기타증빙 ³⁾ 은 50%만 인정
	4	사회적 성과의 측정 및 보고체계가 정관에 명시되어 있고, 실행 ²⁾ 하고 있는 기업		50점		
	5	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해 「기업 이윤의 배분」 및 「청산 시 처분제한」 원칙이 정관에 명시되어 있고, 실행 ²⁾ 하고 있는 기업		30점		
	6	이해관계자(근로자 등)의 의사결정 참여체계가 정관에 명시되어 있고, 실행 ²⁾ 하고 있는 기업		30점		
사회적 가치 실현능력	7	중앙정부, 지자체의 펀드를 취급하는 기관의 주목적 계정 중 소셜임팩트 분야에서 투자를 받은 기업		100점		
	8	최근 5년 이내 중앙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민간(재단, 기업 등)이 시행하는 사회적경제 또는 소셜벤처기업 관련 대회에서 수상한 기업(창업 후 3년이내인 경우 대표자 수상 경력 포함)		30점		
	9	중앙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민간(재단, 기업 등)이 시행하는 사회적경제 또는 소셜벤처기업 육성사업을 통해 창업한 기업 또는 해당 사업에 참여한 기업		20점		
	10	외부기관과의 MOU, 상생협약, 협력관계 등 사업의 주목적과 관련된 사회적가치 실현을 위한 파트너십이 구축되어 실행하고 있는 기업		20점		
대표자의 사회적 가치 창출수준	11	대표자가 사회적 가치 창출 관련 조직(기업의 해당 부서)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 보유		10점		1년 이상 5점 부여
	12	대표자가 중앙정부, 지자체,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사회적 가치 창출 관련 교육을 20시간 이상 이수 또는 소셜벤처 및 사회적 가치 창출 관련 활동(대학 동아리, 대학창업, 공모전 등)을 수행		10점		
점수 합계						점

1) 예시: 미세먼지 저감 기술을 통한 대기환경 개선, 장애인 이동의 자유 추구 등

② 혁신성장성 진단표

혁신성장성 판별표					
판별 항목			점수	자가 진단	비고
기술의 혁신성	1	법령상 인증 확인 보유 기업(벤처기업, 이노비즈기업, 메인비즈기업)	100점		
	2	기술력 또는 상품성에 대한 중앙정부의 인증 ⁴⁾ 을 보유한 기업, 기술 신용평가기관(TCB)으로부터 「T4」등급 또는 기술보증기금의 기술 사업평가등급 「BBB」등급 이상의 평가를 받은 기업	70점		「T6」 또는 「B」등급 이상인 경우 50점
	3	중앙정부의 "혁신성장공동기준" ⁵⁾ 에 따른 품목에 해당하는 제품 또는 서비스를 생산하거나 관련된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	30점		
사업의 성장성	4	상시종업원 10인 이상 기업으로 최근 3년간 매출액 또는 고용인원의 연평균 증가율이 20% 이상인 수도권 기업(수도권 외 지방 기업은 10%) * 단, 상시종업원 5인 이상 기업으로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50점 1) 최근 3년간 매출액 또는 고용인원의 연평균 증가율이 10% 이상인 수도권 기업(수도권 외 지방 기업은 5%) 2) 창업 후 3년 미만 기업의 경우 최근 1년간 매출액 5억원 이상인 기업	100점		
	5	벤처투자기관 중앙정부, 지자체, 공공기관으로부터 또는 민간재단 기업 등의 사회적경제 지원사업으로부터 50백만원 이상의 투자를 받은 기업	100점		50백만원 미만인 경우 50점
	6	법령에 의해 등록, 지정된 창업지원플랫폼 ⁶⁾ 또는 중앙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대학 등의 창업지원플랫폼으로부터 현재 입주 또는 (전문)보육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 기업	30점		
	7	중앙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및 민간재단, 기업 등의 사회적경제·벤처·창업지원사업 등에 선정되어 30백만원 상당 이상의 지원을 받은 기업	30점		
연구개발 역량	8	등록된 지식재산권(특허권, 기술평가를 받거나 심사후등록한 실용신안권, SW프로그램저작권, 품종보호권)을 보유(실시권 포함)하고 있는 기업 * 단, 창업 1년 미만인 기업은 출원 중인 지식재산권도 인정	40점		1건 40점, 2건부터 25점추가 (50점 상한)
	9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⁷⁾ 가 5% 이상인 기업(최근 2년 평균) * 단, 창업후 1년 미만인 기업은 신청일 직전 월까지의 매출액 및 기술개발 금액 ⁸⁾ 으로 확인	50점		3% 이상인 경우 30점
	10	중앙정부의 R&D기술개발사업에서 성공판정을 받은 기업이나,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인증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보유하거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인증(한국콘텐츠진흥원 관리) 기업부설창작연구소 또는 기업창업전담부서를 보유한 기업	30점		
대표자 기술역량	11	최근 5년 이내 중앙정부, 지자체, 공공기관이 주관한 또는 글로벌 창업 경진대회에서 수상한 기업 또는 수상자(팀)가 해당 분야에서 창업한 기업	30점		
	12	자연계 대학교수, 자연계 박사, 기술사 또는 대학 및 상장법인 부설연구소, 공공립 연구기관·특정 연구기관 육성법에 의한 연구기관에서 5년이상 연구원으로 근무한 자가 창업한 기업	10점		
점수 합계			_____ 점		

- 2) 관련 증빙자료는 기업 스스로가 제출해야 함(단, 창업 후 1년 이내 기업은 증빙없이 점수 부여)
- 3) 정관 외 미션선언문, 사업계획서, CSR 보고서 등을 말함
- 4) 산업통상자원부(舊 지식경제부) 선정 세계일류상품 생산기업, 「연구개발특구의육성에관한특별법」에 의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정한 첨단기술기업, 기술적 난이도가 높은 인증(IR52장영실상, NET, NEP)을 받은 기업
- 5) "혁신성장공동기준"이란 정책금융기관 등이 공동으로 마련한 미래 혁신성장 분야의 제품 또는 서비스를 정의한 것임
- 6) 창업기획사(액셀러레이터), 창업보육센터, 1인 창조기업 비즈니스센터 등
- 7) 연구개발비 = 재무상태표상 개발비 증가액(당기개발비-전기개발비) + 손익계산서상 경산연구개발비 및 개발비 상각액 + 제조원가명세서상 경산연구개발비
- 8) 기술개발 및 제품개발에 관련한 인력의 인건비 및 교육훈련비, 소모성 기자재비, 식약/재료비, 기술도입비, 기술정보비, 외부지원연구비, 기타 관련 소요경비 등을 포함한 금액